



「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」 특별용자 업무지침

2020. 2.



보건건강위생과

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특별용자 업무지침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등에게 특별용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

1. 특별용자 규모

- 830백만원

2. 특별용자 대상

-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(신고)를 받은 자

3. 특별용자 제외대상

- 휴업·폐업 중인 업소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기금 부당사용으로 용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

4. 특별용자 한도액

- 시설개선자금
 - 식품 접객업소 : 30,000천원 이내
 - 식품 제조·가공업소 등 : 70,000천원 이내
 - 어린이보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: 10,000천원 이내
- 육성자금 : 20,000천원 이내

* 용자액 소진 시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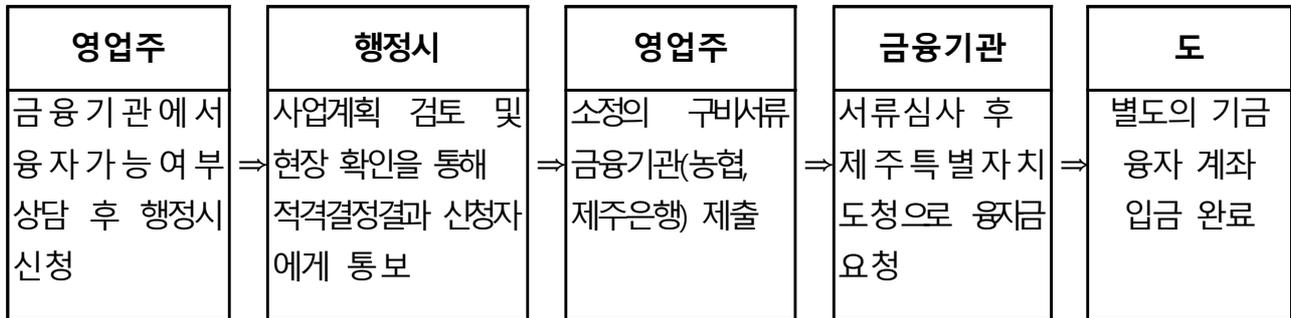
5. 용자 조건

- 용자기간 : 4년(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)
- 이 율 : 연 2%(대출취급 위탁수수료 1% 포함)

6. 상환방법

- 상환기간중의 원리금(균등분할)상환방법은 매월 용자 받은 해당 날짜에 은행에 납부한다.
- 기타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7. 용자절차



-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금융기관 용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.
- 용자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에 신청 한다.
- 행정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여부와 재산상태 등을 용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,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용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인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다음의 구비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.
 -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 서류

-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도에 자금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별도의 기금융자 계좌에 입금한다.

8. 제제

- 용자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시에서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용자금 전액을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한다.
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때
 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한 때
 - 용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때
 - 용자금을 용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
 - 모범음식점·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
 -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. 다만,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9. 추진일정

- 특별용자지원 계획 공고 : '20. 2. 24.(월)
- 신청 및 처리기간 : '20. 3. 2.(월) ~ 4. 29.(수)

용자신청자 현지조사서

용자신청자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	전 화 번 호	
업 소 현 황	업 소 명		허 가 번 호	
	업 종		허 가 일 자	
시 설 규 모	대 지		건 물 규 모	
	영업장면적	m ²	구 조	
재 산 상 태	자 산 총 액	백만원(동산 : , 부동산 :)		
	월평균소득액			
기타(좋은식단 실천여부 등)				
조사자 의견	(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)			
<p>「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한 결과를 보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사자 : 소속 직 성명 (인)</p>				

발급번호 : ○○○○년 - 호

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

성명		생년월일	
소재지		용자금액	

「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(모범음식점·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(운전)자금) 용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용자(신청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용자은행 : (☎)
- 구비서류 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- ○○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

년 월 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인

용자대상자

귀하

○○은행